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0회 임시회
2016. 8. 30.(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4.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9일
-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

3.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충북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간 종료('16. 10. 25.) 시점이 도래되어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충북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16.10.26.~'19.10.25.)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 수탁기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
※ (현)수탁기관 : (사복)원주카톨릭사회복지관(관장 '13.10.26~'16.10.25)
- 위탁방법 :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
- 사 업 비 : 519백만원(기금 50%, 도비 5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단, 위탁 전 관련조례 개정의 경우 위·수탁협약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4. 검토의견

○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와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제6조제7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

○ 종합의견

-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학대 사례에 대하여 현장조사에서부터 상담, 치료, 보호,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례별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초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증가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경험 및 전문성이 검증된 현재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함.
- 다만,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아동의 신체장애, 심리불안으로 인한 반사회적 행동, 가치관의 혼란, 학대하는 부모로 성장하는 악순환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문제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전국 현황

시도명	운영기관수	종사자수	운영형태	시도명	운영기관수	종사자수	운영형태
합계	56	741	민간위탁				
서울	8	96	민간위탁	부산	3	41	민간위탁
대구	3	40	민간위탁	인천	3	39	민간위탁
광주	1	12	민간위탁	대전	1	14	민간위탁
울산	1	16	민간위탁	경기	11	147	민간위탁
강원	4	51	민간위탁	충북	3	37	민간위탁
충남	3	40	민간위탁	전북	3	42	민간위탁
전남	3	45	민간위탁	경북	4	55	민간위탁
경남	3	43	민간위탁	제주	2	23	민간위탁

□ 우리 도 현황

구분	지정(위탁)일	종사자(명)					예산지원(천원)	소재지	수탁기관
		계	관장	상담원	치료사	사무원			
합계	3개소	40	3	33	3	1	1,520,568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00.09.25	18	1	15	1	1	633,570	청주시 율량동	굿네이버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3.10.25	13	1	11	1		506,856	제천시 청전동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6.12.08	9	1	7	1		380,142	옥천군 옥천읍	명지원

관련규정 발췌

□ 「아동복지법」

-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5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7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삭제
4.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삭제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업무)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려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7조(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